

# 최신 판례 예규

## Marketing Tax consulting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이나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 경우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취득 당시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며,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사전법령법인-203, 2020.04.20

### 질 의

-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및 익금에산입할 금액
- 2) 상기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토지 취득비용 +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세무상 처리방법

### 회 신

- 1)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감정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경위, 거래상황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무상으로 양도 받은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기존 공공시설용지

의 사용수익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 2) 상기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용지에 공공시설(이하 '신설 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경우 신설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시행자의 잔존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입니다.

2016.1.1. 전에 투자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 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 2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128, 2020.03.26

### 질 의

-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까지 계속 투자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15.12.15. 법률 제 13560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따른 2017년과 2018년 투자분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방법(3% vs 1%)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96, 2020.03.20

내국법인이 2015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개시하여 2018년에 완료한 경우, 201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조세특례 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제46조에 따라 같은 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의2를 적용하는 것임

현물출자가 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서면법인-1670, 2020.05.18

### ■ 질 의

- 개인이 보유 중인 B법인의 주식을 100% 출자하고 있는 A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서면-2017-법인-2333, 2017.12.08.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음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그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7, 2010.10.25.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사례의 현물출자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현물출자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물출자가 이루어지게 된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260, 2020.05.19

###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과 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적용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

〈갑설〉 분할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을설〉 분할후 사업영위기간만 계산

### ■ 회 신

적격인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간을 말함)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